

◎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-460호

**2017년도 하반기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한약제제개발분야
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**

2017년도 하반기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한약제제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7월 11일

보건복지부장관

사업목표

- 한의약 과학화·표준화·제품화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한의약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및 국민건강증진

I. 지원내용

신규사업 내용

구분	지원분야	주요 내용
한의약선도 기술개발사업	한약제제개발	○ 한의약에 기반하고 한의약 진단·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여 상품화 및 시판 촉진

II. 연구기관 신청자격

-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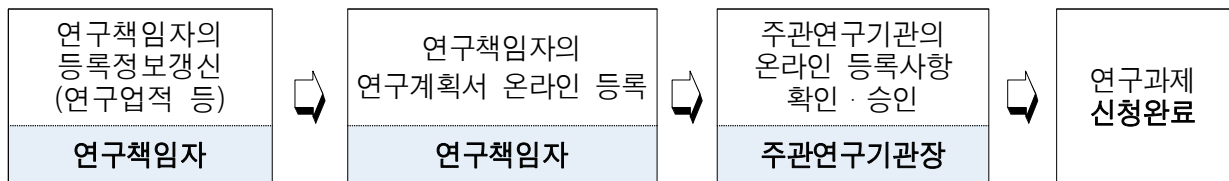
- 국·공립 연구기관
-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-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
-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-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·단체(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)

※ 해당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Ⅲ. 신청 요령

□ 신청방법 및 서류 제출기한

- 신청방법 :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
 -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(www.htdream.kr)에 파일 업로드 (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)
 -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(전자인증) 과제신청 일괄제출 공문
- ※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 별도 제출



○ 제출기한

구분	지원분야 (RFP명)	연구책임자 과제신청 (전산입력) 마감일	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(또는 공문제출) 마감일
한약선도기술 개발사업	한약제제개발	2017. 8. 30.(수) 14:00	2017. 8. 31.(목) 14:00

※ 신청마감 시간까지 완료 접수 (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)

IV. 관련 법령 및 규정

- 보건의료기술진흥법,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,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,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,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,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,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

※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(www.htdream.kr) - 관련법령 참조

V. 기타

- 연구개시 예정일 : 2017년 11월 1일 (※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□ 참여 제한

-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, 연구개시 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
-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
-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
※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(www.ntis.go.kr)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수행된 또는 수행중인 과제와의 중복여부를 확인하며, 필요시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중복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

- 최종 연구종료 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

□ 신청 제한

-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,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

※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

※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-5호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」 참조

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·세부연구 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
- 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 제한기준을 초과할 경우, 선정과제가 탈락할 수 있음

□ 참여기업부담금

※ 참여기업 부담금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며,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

-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, 참여기업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1.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: 총 연구개발비의 50% 이상
 2.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: 총 연구개발비의 40% 이상
 3.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: 총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
 4.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,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1/3 이하인 경우 : 총 연구개발비의 40% 이상. 다만,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/3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
 5.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,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2/3 이상인 경우 : 총 연구개발비의 40% 이상
 6.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,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/3 이상인 경우 : 총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
 7. 그 밖의 경우 : 총 연구개발비의 50% 이상
-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름
 1.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: 부담금액의 15% 이상
 2.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: 부담금액의 13% 이상
 3.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: 부담금액의 10% 이상
-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(범위)은

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기관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유지·관리하고 관계공무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

1.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(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% 이내,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% 이내)
 2.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, 재료비,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(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% 이내,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% 이내)
- 정부지원 연구비가 신청액보다 삭감 지원될 경우에도 신청 시 부담하기로 한 참여기업부담금은 삭감할 수 없음
- ※ '중소기업'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함
 - ※ '중견기업'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따른 기업을 말함

세부사항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8조(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) 참조

□ 연구시설·장비 도입시 유의사항

-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·장비를 구축할 경우 '연구개발 과제 평가단'에서 심의 실시
 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'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(3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)'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함
-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를 구축할 경우, '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평가단(미래창조과학부 주관)'의 추가변경심의를 받아야 함
 - ※ 심의대상인 연구시설·장비가 심의를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구축불가(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외)
 - 선정 이후 년도부터는 차기년도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예산을 심의하는 '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평가단(미래창조과학부 주관)'의 본심의를

받아야 함(매년 5~7월 예정)

- ※ 매칭펀드가 포함되어 1억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를 구축하려는 경우,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상이거나 정부출연금의 비중이 50% 이상인 연구시설·장비는 심의대상임
- ※ 5억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를 구축할 경우, 사전기획보고서를 필수 제출하여야 함
- ※ 세부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(미래창조과학부)」 참조
- 연구시설·장비 도입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도입(변경·취소) 심의 대상일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3천만원 이상(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)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구축일로부터 30일 이내 '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서비스(<http://nfec.ntis.go.kr>)'에 등록하여야 하며, 향후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제출해야 함
- “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” 제출
 - 연구개발비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시, 정부출연금으로 구입한 국가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'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서비스'에서 “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

□ 기술료 제도 안내

○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

-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권의 내용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두 기관이 합의하여 정함
- ※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비영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 계약서 사본 1부를 전문기관에 제출
-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에 징수한 기술료와 사용한 결과에 대해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지침」 관련 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
- ※ 기술료 관리지침에 따른 기술료 사용 기준에 따라 반드시 사용

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모안내서 참조

VI. 문의처

○ 홈페이지

(소관부처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

(전문기관)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(www.htdream.kr)

※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참조

○ 문의처

☞ 문의사항은 가급적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고객센터(질의응답)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능한 신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구분	지원분야 (RFP명)	과제제안요구서(RFP) 과제내용		기타 HTdream 전산문의	
		담당부서/ 담당자	연락처	담당부서/ 담당자	연락처
한약약 선도기술 개발사업	한약제제개발	한약약사업팀/ 선혜숙	043-713-8264	성과정보팀/ 구교원	043-713-8177